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II. 검토의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 이관

개정안은 종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임.

그런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법규명령을 발할 권한이 없어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발할 수밖에 없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소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점에서,¹⁾ 총리

1)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령으로 규율하도록 한 제4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67조제1항 및 제77조제3항의 “총리령”으로 위임하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고, 종전에 이 법에 따라 발한 “총리령”은 이 법에 따라 발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보도록 적용례를 신설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명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u>총리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명칭)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 (이하 생략)
<u><신 설></u>	부 칙 <u>제2조(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본다.</u>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